

-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

제안설명서

2025. 9.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체육청소년과)

제안 설명서

설 명 자: 체육청소년과장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위하여 운영 중인 달서구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계약 해지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위기청소년 보호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의 위탁운영 기간 만료(2025. 12. 31. 日)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청소년 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건물 내 일부 포함)은 상화로 420의 1필지(상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0,478.81㎡ 규모로 1999. 5. 1일 개관하였습니다.
 - 현재 수탁기관은 계명문화대학교로 위탁기간은 2023. 1. 1.~신규 수탁자 선정시까지입니다.

- 주요사업은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체육활동, 청소년 자질 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역민을 위한 문화·체육활동 사업, 시설 관리 등입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곳으로 달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 달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산로7길 39(월성동) 월성3주공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411.8㎡(지상2층) 규모로 2018. 1. 15. 이전 개소하였습니다.
- 성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계대동문로11길 33(신당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76.67㎡(지상2층) 규모로 2014. 4. 24. 개소하였습니다.
- 현재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으로 위탁기간은 2023. 1. 1.~2025. 12. 31.까지 3년입니다.
- 주요사업은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 상담 및 심리검사,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청소년안전망 구축 운영,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시설 관리 등입니다.
- 청소년쉼터는 와룡로 10안길 11(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529.96㎡(지상4층) 규모로 1999. 12. 28. 개소하였습니다.
- 현재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대구YWCA로 위탁기간은 2023. 1. 1.~2025. 12. 31.까지 3년입니다.
- 주요사업은 가정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이 정상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보호(숙식 제공), 상담 및 선도 활동, 사회봉사활동과 취미, 문화·체험활동 사업, 가출예방 사업, 시설 관리 등입니다.

향후 계획과 운영주체 선정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5. 9월 중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고, 10월에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1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운영주체 선정방법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서 등을 접수하여 수탁기관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복지 향상을 위한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00925096
----------	----------

제출일자: 2025. 9. 3.

제 출 자: 달서구청장
(체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계약해지와 청소년의 보호, 복지 향상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의 위탁운영기간 만료(2025. 12.. 31.字)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갖춘 청소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운동장및 공영주차장 건물내 일부 포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7조

○ 필요성

- 청소년시설 운영은 청소년 특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운영해야 하므로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유리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건물 내 일부 포함)

- 청소년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양강좌
- 청소년의 정서함양 교육
- 청소년의 상담활동
-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취미교실 등 수련거리 발굴육성
- 청소년의 체력단련 및 능력개발
- 기타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 각종 체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상담사업계획 수립·집행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의 개인·집단·전화·사이버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구축 운영
- 청소년전화 1388운영
-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자료 수집 및 제공
- 청소년참여 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기타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쉼터

- 가정이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이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보호(숙식제공), 상담 및 선도활동
- 가출예방에 관한 사업
- 집단상담, 개별상담 및 교육사업

- 사회봉사 활동과 취미, 문화체험활동 사업
- 기타 청소년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라. 위탁시설 개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 위 치: 상화로 420(상인동)
- 시설규모: 부지 6,488.9㎡, 연면적 4,124.88㎡(지하 1층, 지상 3층)
- 개관일자: 1999. 5. 1.
- 층별 시설내역

층 별	면 적	시 설 내 역
계	4,124.88㎡	
지하1층	1,522.35	수영장, 탈의실, 샤워장, 발전기실, 기계실
지상1층	1,407.36	안내데스크, 체육관, 관장실, 사무실(2실), 동아리실, 강의실(2실), 화장실
지상2층	668.58	어울마당, 강의실(7실), 화장실
지상3층	526.59	댄스실, 음악실(2실), 강의실, 화장실
야외시설		농구장, 야외무대, 버스주차장, 파고라(3식), 전통놀이체험장

【청소년수련관운동장 및 공영주차장 건물 내 일부】

- 위 치: 상화로 406(상인동)
- 시설규모: 부지 6,612.9㎡, 연면적 6,353.93 (지하 2층, 지상 2층)
- 개장일자: 2007. 5. 1.
- 층별 시설내역

층 별	면 적	시 설 내 역
계	6,353.93㎡	
지하2층	314.18	기계실, 전기실, 창고
지하1층	5,475.63	주차장(195면), 주차장 사무실, 창의놀이터(청소년전용공간), 화장실
지상1층	335.9	창의놀이터(청소년동아리방), 샤워장, 화장실
지상2층	228.22	산불사무실 및 공익요원 대기실
야외시설		주차장(47면), 풋살장(2면), 트랙, 관중석(369석), 파고라(3식)

- ※ 주차장 건물의 지하층 창의놀이터, 지상1층, 야외시설 중 풋살장, 트랙, 관중석, 파고라 시설만 위탁
- ※ 2020. 1. 1.자로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주차관리과 관리)

○ 인력현황

(2025. 1. 1.기준/단위: 명)

총 인원	관장	운영부	총무팀	청소년 활동팀	방과후 아카데미	평생 교육팀	체육 사업팀	시설팀
27	1	1	3	5	3	4	8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달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 치: 학산로7길 39(월성동)
- 시설규모: 연면적 411.8㎡(지상2층)
- 개소일자: 2009. 7. 14. / 2018. 1. 15. (이전개소)
- 층별 시설내역

층 별	면 적	시 설 내 역
계	411.8㎡	
지상1층	197.7	사무실, 상담대기실, 교육실, 집단상담실 등
지상2층	214.1	상담실(3실), 사업실, 그 외 공간

○ 인력현황

(2025. 1. 1.기준/단위: 명)

총 인원	팀장	상담사	동반자	디지털미디어
13명	1	3	8	1

【성서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 치: 계대동문로11길 33(신당동)
- 시설규모: 부지 354.93㎡, 연면적 276.67㎡(지상 2층)
- 개소일자: 2014. 4. 24.
- 층별 시설내역

층 별	면 적	시 설 내 역
계	276.67㎡	
지상1층	143.47	사무실, 상담실(2실), 심리검사실, 인터넷방, 화장실(여)
지상2층	128.52	교육실, 상담대기실, 화장실(남)
야외	4.68	스낵바, 야외테이블

○ 인력현황

(2025. 1. 1.기준/단위: 명)

총 인원	센터장	팀장	상담사	행정원	동반자
7명	1	1	2	1	2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위 치: 서당로 30, 신당동(성서센터) / 학산로7길 39, 월성동(월배센터)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325(2015. 4. 14)호에 의거 지정·운영

○ 개소일자: 2015. 5. 12. / 2024. 7. 1. (이전개소)

○ 지정현황

- 지정기관: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지정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시설규모

- 성서센터: 연면적 358㎡(지상1층)
- 월배센터: 월배상담복지센터 내 파견

(성서센터)

구 분	면적	시 설 내 역	비 고
지상1층	358㎡	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2실), 전용공간(사진관), 공동공간 등	

○ 인력현황

(2025. 1. 1.기준/단위: 명)

총 인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월배센터(파견)	
	팀장	상담원	고립은둔	팀장	고립은둔
8	1	3	1	1	2

※센터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겸직

○ 등록현황

(2024년 기준/단위: 명)

계	9~15세	16~18세	19세 이상
265	35	184	46

【청소년쉼터】

- 위 치: 와룡로10안길 11(본동)
- 시설규모: 부지 257.4㎡, 연면적: 529.96㎡(지상 4층)
- 개소일자: 1999. 12. 28.
- 층별 시설내역

층 별	면 적	시 설 내 역
계	529.96㎡	
지상1층	143.51	체력단련실
지상2층	144.71	사무실, 집단프로그램실, 정보이용방
지상3층	130.19	거실, 침실(3실), 관리자실, 화장실(2실), 샤워실(1실), 주방
지상4층	111.55	거실, 휴게실, 침실(4실), 화장실(2실)

- 인력현황

(2025. 1. 1.기준/단위: 명)

총 인원	소장	부장	상담원	행정원	조리원	야간상담원
9	1	1	4	1	1	1

마. 위탁기간

- 청소년수련관: 2026. 1. 1.~2028. 12. 31.(3년)
 - ※ 청소년수련관 운영 상황에 따라 위탁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6. 1. 1.~2030. 12. 31.(5년)
- 청소년쉼터: 2026. 1. 1.~2030. 12. 31.(5년)

바. 수탁자 선정 방식: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청소년분야 전문가(대학교수) 자문

- 민간이 가진 청소년 육성, 보호, 복지에 대한 전문성 활용, 인력구성의 유연함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경영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
- 관련 법령에 근거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 지역내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운영 가능
- 정기적인 시설 평가, 지도 감독을 통한 운영의 투명성 확보

3. 향후계획

- 가. 위탁운영 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2025. 9~10월
- 나.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선정: 2025. 10월
- 다. 위탁계약 체결 등: 2025. 11월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1] 참조
- 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붙임2] 참조
- 다. 청소년시설 재위탁 운영 계획: [붙임3] 참조

붙임 1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 청소년활동 진흥법 [약칭: 청소년활동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2.>
-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12.>
[전문개정 2014. 1. 21.]

□ 청소년복지 지원법 [약칭: 청소년복지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5. 28.]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29.]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운영 및 위탁)

-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위탁관리)

- ① 구청장은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2025. 5. 12.)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위탁운영)

-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수탁자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위탁운영)

-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청소년쉼터를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1.,2020. 5. 14.,2025. 5. 12.)
- 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5. 21.,2020. 5. 14.,2025. 5. 12.)
- ③ 수탁자는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0.5.14.)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붙임 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전문가 자문 검토내용

- 대구과학대학교 청소년교육지도과 박호문 교수

검토기준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같은 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관 기준에 적용하며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 ○ 청소년단체 및 전문성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을 통해 관내 청소년활동 및 상담시설의 공통된 운영 기준으로 전문성과 형평성 확보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본법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관련 법령으로 운영되므로 전반적인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게 확보 됨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역에 따른 정원의 증원 및 재정 부담 완화와 청소년전문단체의 민간 위탁을 통한 청소년관련 전문 인력의 효율적 구성과 조직의 유연성 극대화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청소년시설 간 연계로 전문성 등 청소년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의 효율성 확보 ○ 청소년 육성(활동, 복지, 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운영이 가능함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에서 정기적 평가를 통한 성과 측정 (위탁수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청소년시설 관리 및 운영의 적절성과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시설은 공익적 사업과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위기 예방·개입, 지역사회 보호체계 연계를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민간기관이 보유한 네트워크 및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복지·교육·의료 자원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지역 공공서비스 참여와 달서구청의 적절한 지원을 통한 연계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에 원활할 것으로 판단됨

- 대구한의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상담전공 강영배 교수

검토기준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대구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업무 수행. 유사기관 운영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을 통한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 필요
3. 경제적 효율성	직영에 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됨. 특히, 민간단체의 경우 기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참여가 용이함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법적으로 청소년지도사 등 국가자격 소지자가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청소년수련시설은 2년마다 성과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의 경우, 재위탁 등의 제반 사항을 고려했을 때 성과 창출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안전 문제 등은 민간위탁 이후에도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함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급변하는 청소년정책환경, 교육환경에 능동적이며,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검토기준	검토내용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같은법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등의 위탁운영)에 해당됨 ◦ 관내 청소년시설의 공통된 기준과 적용으로 통일성과 형평성 확보 ◦ 필요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을 파견하여 장기적 사업관리를 할 수 있음.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관련 규정으로 운영되므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 민간 위탁의 운영관리를 통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3.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비용의 절감을 통해 효율성 제고 ◦ 직영에 따른 정원증원 및 재정 부담 감소 ◦ 전문인력 구성과 채용에 있어 유연성 확보 ◦ 경쟁력 있는 청소년단체 선정 및 청소년전문가활용 가능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 활용 가능 ◦ 청소년 관련 시설간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로 전문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추진 용이 ◦ 시설간 네트워크 용이로 현장의 변화와 수요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반영·적용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 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기관, 시설 등의 평가) 등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정기적으로 평가 (위탁수행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기본법 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7조(감독),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9조(감독)에 따라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시설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시설은 대부분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도와주기 위한 공익적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음 ◦ 민간의 지역 공공서비스 참여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운영 가능

붙임 3 청소년시설(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쉼터) 재위탁 운영 계획

-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계약 해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의 위탁 계약 기간 만료(2025. 12. 31.일자)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공정성 확보와 투명한 절차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I 관련규정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9조

II 추진방향

- 청소년수련관 등 3개 청소년시설 동시 재위탁추진
-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결정

III 위탁개요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위탁단체	비 고
달서구청청소년수련관	상화로 420, 406(상인동)	계명문화대학교	수영장, 풋살 경기장, 운동장 포함
달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월배: 학산로7길 39(월성동) 성서: 계대동문로11길 33(신당동)	(사)마하야나 불교문화원	월배·성서센터, 학교밖지원센터 포함
달서구청청소년쉼터	와룡로10안길 11(본동)	(사)대구YWCA	

- ※ 달서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달서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정단체
- 지정기간: 24. 1. 1.~26. 12. 31. (3년)

위탁기간

시 설 명	위탁기간	비 고
달서구청소년수련관	2026. 1. 1. ~2028. 12. 31.(3년)	· 행정의 효율성과 청소년시설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름 (5년 이내로 규정)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6. 1. 1. ~2030. 12. 31.(5년)	
달서구청소년쉼터	2026. 1. 1. ~2030. 12. 31.(5년)	

-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위탁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으며, 노후 시설 보강 또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 등의 가능성과 신규 수탁자의 운영 검증 필요성으로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위탁

※ 위탁기간은 수탁자 모집·선정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위탁예산 (2025년 기준)

- 청소년수련관: 550백만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3백만원(월배) / 210백만원(성서)
-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81백만원
- 청소년쉼터: 465백만원

※ 위탁운영비는 사업계획 검토 및 심사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위탁운영비 외 자체사업 수입 등 다각적 재원 조달 방법을 통해 예산을 보전 운영해야 함.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로 선정

신청자격 요건

- 자격기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서 공고일 현재
 - 청소년수련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사무소 소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 소재
-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단체(대표자 및 시설장 내정자)
 - 최근 5년이내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단체
 - 최근 3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행정처분(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을 받은 경력이 있는 단체

- 법인 및 산하시설이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단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준용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관

***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의 정의**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근거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근거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6호[2005.04.08.(금), 관보 제15963호]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위탁조건(공통사항)

- 수탁자는 관련 법령, 운영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구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함
- 시설장은 반드시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하여야 함
-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승계하여야 함

□ 선정기준

- 적합성, 재정능력, 사업실적, 사업계획의 적정성, 운영자의 전문성 등 종합적 평가
- ※ 수탁기관에 대한 법인전입금 및 재정부담 요구 및 기부금 여부는 심사기준에서 제외
: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

□ 추진일정

추진기간	추진내용	비고
2025. 9. 19.~10. 10.	모집 공고	1개 단체 이하 신청 시 재공고
10. 13.~10. 15.	신청서 접수	
10. 16.~10. 22.	수탁기관심사위원회 구성	9인 이내
10. 23.~10. 28.	심사 준비 및 자료 검토	
10. 31.(예정)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11월중	위탁계약 체결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5. 9. 19.~10. 10.(21일간)

※ 응모단체가 없거나 1개 단체가 응모할 경우 재공고(5일 이상)

○ 공고내용: 공고문 〈붙임2〉

- 신청자격, 위탁내용, 선정기준, 신청서류 등 제반사항

○ 접수기간: 2025. 10. 13.~10. 15.(3일간)

※ 근무시간 내 접수(09:00~18:00)

○ 접수장소: 달서구청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우편접수 불가)

○ 신청시 제출서류: 위탁운영 신청서 〈붙임3〉

① 사업계획서 (서식 1)

② 서약서, 위임장 (서식 2),(서식 3)

③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대표자 및 시설장) 각 1부(서식 4)

④ 단체의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 허가증 사본, 수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1부

⑤ 단체의 조직 및 대표자의 경력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단체의 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⑦ 단체의 청소년시설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⑧ 단체의 청소년관련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⑨ 단체의 외부(정부, 지자체)로부터 받은 공모사업 실적, 수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⑩ 단체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⑪ 시설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⑫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1부

수탁기관 심사위원회 * 별도계획 수립

○ 위원회 구성

- 9인 이내로 구성
 - 청소년정책 또는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 청소년정책과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의 법률전문가 등 심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
- 신청접수 마감 후 위탁운영 신청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위촉장은 별도 수여하지 않고 선정심사 후 자동해산

○ 심사위원회

- 심사일시: 2025. 10. 31.(금) 예정
- 심사장소: 4층 회의실
- 위탁심사표 <붙임4>

○ 결정방법

- 신청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
 -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합산한 후 최고점수를 획득한 단체로 선정
-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 재공고 후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 (* 1차 공고 시 신청기관은 재공고 신청으로 간주)
 - 평균득점 70점 이상 시 결정
 - 평균득점 70점 미만 시 재공모

○ 심사결과 공개

- 결과공개: 2025. 11월중
- 공개방법
 - 구시설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여성가족부, 전국 지자체 통보

위탁계약 체결

○ 일 시: 2025. 11월중 * 별도계획 수립

○ 계약기간

- 청소년수련관: 2026. 1. 1.~2028. 12. 31.(3년)
 - * 청소년수련관 운영 상황에 따라 위탁시점이 앞당겨질 수도 있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6. 1. 1.~2030. 12. 31.(5년)
- 청소년쉼터: 2026. 1. 1.~2030. 12. 31.(5년)

○ 계약내용

- 필수사항: 위탁대상, 계약의 목적, 위탁기간, 위탁사업내용, 시설관리,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계약의 해지 등
- 기타사항: 수탁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 계약서 2부 작성 후 양자간 서명·날인